■ 거치식 예금 약관

제1조 (적용범위)

- ① 거치식예금(이하 '이 예금'이라 한다)이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만기에 찾는 예금을 말한다.
-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.
- ③ 양도성예금증서 및 표지어음의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한다.

제2조 (지급시기)

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. 다만,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.

제3조 (이자)

-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**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**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. 그러나,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월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② 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일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.
- ③ 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에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**예금일**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 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,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.
- ④ 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한다.
- ⑤ 이 예금중 정기예금을 복리식으로 약정한 경우의 예금이자는 제 ①항의 이율로 만기 후 1년까지의 이자는 제②의 이율로 매월 복리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. 그러나 만기 후1년 초과분은 제②항의 방법으로,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는 제③항의 방법으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.

제3조의 2 (특별이자)

계약일 당시에 은행이 별도로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를 통하여 만기에 이자를 찾는 것으로 약정하는 예금에 대하여 특별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만기까지 예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이자를 지급한다.

제4조 (장기예금으로의 계약변경과 이자)

- ① 기명식 정기예금을 만기일 전에,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변경할 때는 제3조 제3항에 상관없이 예금일부터 계약 변경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 제1항의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. 다만,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 서 뺀다.
- ② 계약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청구했을 때 그 이자는 변경전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.

제5조 (거래방법)

예금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통장 발행 여부를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(시행일) 이 약관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※ 이 약관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